■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12. 12.>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소명	영업등록번호
	우수수입업소 등록번호	

변경내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우수수입업소의 명칭		
	우수수입업소의 소재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명칭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소재지		
	등록식품의 명칭		
	등록식품의 원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배합비율을 포함)		
	등록식품의 제조·가공 공정		

변경사유	
분실사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	우수수입업소 등록증	수수료
		28,000원

유의사항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